

國會에서의證言・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(代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2. 2.

발 의 자 : 정치개혁특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가. 2000년 12월 15일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, 2001년 9월 24일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, 2001년 12월 17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,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이 2002년 1월 21일에 각각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됨.
- 나. 2002년 1월 23일에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. 2. 22까지 2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3건의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.
- 다.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기 3건의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심사함.

라. 2002년 2월 25일 제2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도 전자문서,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국회의 검증실시와 관련하여 검증절차를 보완하는 등 국회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가.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.

나. 국회의 검증실시에 있어서 검증대상기관에 대한 검증실시통보서의 발부 등 검증절차를 명문화함(안 제10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)

國會에서의證言·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

國會에서의證言·鑑定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,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·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, 제3항,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.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送達되어야 한다.

③ 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, 대상, 방법,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의 통보서의 送達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送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第5條(證人등의 출석요구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⑤ (생략)</p> <p>第10條(檢證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第5條(證人등의 출석요구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,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·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第10條(檢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.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送達되어야 한다. ③ 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, 대상, 방법,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⑤ 제2항의 통보서의 送達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